

소련특허 제도해설(1)

I. 총론

1. 특허관련법규

소련의 특허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가. 소련헌법(1977.10.7. 제9기 소련연방최고회의 특별 7차회의에서 통과 발효)

나. 소련기본민법(1961.12.8. 소련연방최고회의 통과. 1962.5.1. 발효)

다. 발견, 발명 및 합리화계획법(1973.8.21. 소련각료회의 결의안 제584호로 승인, 1976.7.14. 결의안 제562호 및 1978.12.28. 결의안 제1078호로 개정) (이하 "특허법"이라 약칭함).

라. 발명특허, 의장, 상표등록 수수료 규정(1982.9.13. 소련각료회의 의결)

마. 특허출원서 작성에 관한 지시(국가발명 및 발견위원회발간 1974.5.1. 발효) 및 과학적, 기술적, 국가심사에 관한 지시(국가 발명 및 발견위원회 위원장 승인 1974.1.1. 발효).

2. 외국인의 권리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련 특허법과 기타 특허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소련 내에 주소와 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발명자는 소련연방상공회의소를 통하여 특허출원등록절차와 특허권유지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소련연방상공회의소는 1985.3.

14. 상공회의소최고 회의의 의결로 전연방협회 소유즈페이턴트(이하 "V/O sojuzpatent"라 칭함)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V/O sojuzpatent는 외국출원인을 대리하여 특허출원등록 및 특허권유지절차를 밟아준다. 또한 외국인 발명의 소련내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해주기 위한 업무도 수행한다. 특허권 침해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외국인 특허권자를 도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나 소송과정에서 V/O Sojuzpatent는 외국특허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V/O sojuzpatent는 외국인의 소련내에서

目 次

- I. 총론
- II. 출원서의 초안작성 및 출원
- III. 출원의 심사
- IV. 권리의 보호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의 특허권 취득, 유지, 행사를 위한 대리업무와 소련인의 해외 특허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하며 소련인의 소련국내특허출원업무는 대리하지 아니한다.

3. 발명의 법적보호 유형

소련에서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식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발명자증(Inventor's certificate)

둘째, 특허(Patent)

발명자는 자기가 그 발명의 발명자임을 인정해 주고 법이 정하는 바의 권리와 특혜를 부여해 줄 것은 요구하되 발명에 대한 독점적권리는 국가에 양도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증이 발급된다.

또한 발명자는 발명자인정과 함께 발명에 대한 독점적권리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된다.

발명자는 소련에서의 발명의 법적보호유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25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직 발명자증만 허여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발명의 주체가 “화학적공법으로 얻어진 물질”이거나 “제약용물질과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예방, 진단 및 치료방법”인 경우에는 특허권을 허여하지 아니한다.

지난해 가을에 채택 예정이었던 개정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자증제도는 더이상 발명보호수단으로 존치되지 아니한다.

서비스발명에 대해서도 발명자증만 허여된다. 그러나 소련의 기관과 외국기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업무중 만들어진 공동발명의 경우 쌍방간의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특허권을 허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라도 발명자증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련측 발명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특혜는 그대로 소련발명자에게도 주어진다.

발명자증에 의한 독점적권리든지 특허권에 의한 독점적권리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그 독점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소련영토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 항공,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배제된다.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는 일단 법적 보호가 허여된 경우 그 출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1. 발명자증(Inventor's certificate)

발명자증은 발명자의 이름으로 발급되며 다음사항을 증명한다. 즉, 발명의 명칭, 발명의 우선권, 발명자명, 발명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을 확인한다.

발명의 법률적 보호의 기본 유형은 발명자증이다. 외국인도 자기나라에는 유사한 보호유형이 없을지라도 발명자증을 획득함으로써 소련에서 그 발명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발명자증에 의하여 보호되는 발명은 전국가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 협업기관, 공공기관은 발명자증에 의하여 보호되는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

발명자증은 발명자에게 영원히 발생한다. 발명자의 권리를 확정하는 문헌에서 제한이 없다. 많은 실질적 또는 명예뿐만 아니라 수령의 권리를

발명자는 발명을 처분할 수 있다. 그 결과 국가기관은 발명에 대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 기간동안 국가, 협업기관,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들은 국가의 승인하에서만 발명을 실시, 이용할 수 있다.

소련에서 허여된 발명자증에 관련된 상품의 수입(소련으로의)과 관련한 문제는 대외무역거래 계약시 해결되는 것으로 본다. 계약시 인도상품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고, 실시권허여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발명자증 허여의 경우에는 관납료는 부과되

지 아니한다.

3-2. 특허(Patent)

특허는 그 주제가 발명임을 확인하고 또한 발명의 우선권과 발명자를 확인하며 발명에 대한 독점적권리가 특허권자에게 있음을 증명한다.

특허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자기명의로 출원한 날로부터 15년간 독점적권리가 인정된다.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와 등록된 특허권의 독점적인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특허가 허여된 발명은 특허권자의 승락없이 어느 누구도 이를 실시할 수 없다.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그의 발명의 실시를 라이선스계약으로 허락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허권전체를 양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은 당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어떤 조건에서는 발명의 실시에 관한 권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전체에 걸쳐 얻을 수 있으며 또는 그 생산물을 소련에서 생산, 판매하는 기간동안만 부분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특허가 허여되면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아무도 특허권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특허권의 실시허락 또는 양도에 대한 계약은 국가발명 및 발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상기 계약은 무효로 된다.

특허권자의 독점적권리를 침해한 자는 소련 민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특허등록료와 특허권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상기 관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은 상실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내에는 특허권자가 발명자인 경우 발명자의 요구에 따라 또는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다른 경우 양자의 공동요구에 따라 특허권을 발명자증으로 바꿀 수 있다.

특허출원일전 기업, 기구, 기관이 소련내에서 발명자와 별도로 발명과 동일한 타인의 발명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해놓은 경우에는 기업, 기구, 기관은 아무런 대가의 지불없이 상

기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소련에서도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발명이 국가에 특별히 중요하고 특허권자와 특허권의 실시허여 또는 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련 각료회의는 특허권의 국가에 의한 강제 매입명령을 내리거나 적당한 기관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여해 주고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가격을 정해 줄 수 있다.

특허권의 강제매입과 발명의 실시권허여시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소련각료회의나 유관국가기관의 지시로 결정된다. 특허권의 강제매입이나 발명의 실시권허여의 근거는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된다.

3-3. 추가발명자증과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과 추가특허는 보충적인 발명에 대하여 허여되는 법적보호유형이다. 보충적 발명(Supplementary invention)이라함은 이미 발명자증을 허여 받았거나, 또는 특허된 발명의 개량된 발명으로서 원발명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을 말한다. 이미 발명자증이 허여된 원발명에 대한 보충적발명에 대해서는 추가특허는 안되고, 오직 추가 발명자증만이 허여된다.

그러나 특허가 허여된 원발명에 대한 보충적 발명에 대해서는 추가특허 또는 추가 발명자증이 선택적으로 허여될 수 있다. 원발명자가 자기의 보충적발명에 대해 원발명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명자증 청구출원을 하면 동일발명에 대한 타인의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

소련에서의 공고는 “발견과 발명”이라는 제호의 국가발명 및 발견위원회의 공보에 게재된다. 만약 원발명이 공보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련국가발명등록소에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다.

원발명에 대한 발명자증 또는 특허가 보충적 발명과는 무관한 이유로 무효되거나 또는 원발명에 대한 관납료의 납부기간이 초과된 경우에 보충적인 발명에 대한 발명자증 또는 특허권은

추가적인 것이 아닌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원발명의 출원일로부터 15년후에 원발명의 개량된 발명이 출원되는 경우에는 추가발명자증이나 추가특허가 아닌 독립적인 발명자증 또는 특허권이 허여된다.

4. 발명의 개념

4-1.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국가경제, 사회문화 활동 또는 국방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필수구성요소에 의하여 구별되고,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발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신규의 장치(new device)(예. 기계, 기구, 장치 등)
- 신규의 방법(new process)(예. 조립공정, 물질의 생산공정, 처리방법 등)
- 신규의 물질(new substance)(예. 합금, 혼합물, 비화학적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용액, 화학적 결합 등)
- 공지의 장치, 방법, 물질의 신규용도(novel application)(필수적인 요소의 변화를 수반하지 아니한 신규의 용도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 미생물의 신규주(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 조류의 유전적 배양)

다음의 것들도 발명과 동일한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

- 농작물, 기타 배양식물의 새로운 변종, 잡종
- 가축 또는 가금의 새로운 품종
- 모피동물의 새품종 그리고 뽕나무 누에의 신종

4-2. 발명의 보호기준

보호대상으로서의 발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문제의 기술적 해결방안

나. 신규성

다. 필수요소

라. 유용한 결과

가. 문제의 기술적 해결방안

문제의 기술적 해결방안의 기준으로서 먼저 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해결방안 리스트가 있다. (이하 "6.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에서 상세기술)

발명으로 간주되는 것이라 판단되면 그 발명의 재현성(reproducibility)뿐만 아니라 응용성(applicability) 또는 작동성(operability)의 유무여부가 기준이 된다.

전문가가 출원전 해결방안이 보호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또는 작용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 신규성, 유용한 결과의 가능성, 또는 필수 요소에 관한 심사없이 거절이유를 보낸다.

나. 신규성

출원일전에 이들 해결방안의 요지나 동일한 해결방안이 소련내에서나 해외에서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해결방안은 신규의 것으로 인정된다.

발명의 요지가 공개되어서는 아니될 불특정다수의 대상에 발명과정, 분석, 검사, 기술문헌의 초안작성, 승인, 출원서 초안작성, 발명의 출원 및 심사와 관련된 문헌의 보관과 관련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련 특허법은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세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다. 필수요소

만약 출원시 과학적, 기술적으로 이미 공지된 다른 해결방안과 비교하여 그것이 새로운 특징의 결합이라면 그 기술적 해결방안은 새로운 필수요소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청구된 해결방안에서는 새로운 특징의 결합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과학적, 기술적으로 공지되지 아니한 당해 기술적 해결방안을 구별시키는 필수요소.

b) 이미 공지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요소를 포함한 공지의 물건과 특허청구된 물건에서 발견되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는 필수요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해결방안이 필수요소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a) 특허청구된 해결방안을 원형(Prototype)과 구별시키는 요소와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는 공지된 기술적 해결방안들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b) 특허청구된 해결방안이 공지된 해결방안의 요소와 불일치하며 공지된 제반특징의 결합과 균등하지 아니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물건의 제반특징이 흔히 측정될 수 있다는 사실 즉, 예를 들면, 열저항, 제초제, 촉매활동 등을 고려하면 질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요소가 독특하고 새로운 기술요소로 인정되지 않지만, 양적인 변화는 비록 그 변화가 불규칙적이라 하더라도 독특하고 새로운 기술요소로 인정된다.

라. 유용한 결과

유용한 결과란, 그 발명의 원형 즉, 유사한 선행기술 가령, 기계장치, 방법, 물질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할 때, 발명의 이용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더욱 새롭고, 높은 수준의 결과를 말한다.

유용한 결과란 예를들면 노동생산성 및 장비의 효율성 제고, 재료의 절감, 생산량증대, 품질향상, 생산비절감, 기술공정의 단순화 및 신속화, 노동조건의 개선, 안전기술, 질병의 예방 및 퇴치의 단순화, 제초제 및 살충제의 선택적 작용화, 농작물의 수확증대, 열악환경 및 고온 또는 저온 등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지구력강화 등을 말한다.

보다 더 손쉬운 방법으로 과거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발명도 유용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명의 정의상 유용한 결과는 발명의 대상의 일부분에만 미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전체에 그 결과가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 발명의 대상이 잘못 선택되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필수요소를 결합하여 얻어지는 유용한 결과는 특정 필수요소들을 채용하므로 확실하게 되고 증가, 보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효과는 종속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의 이용으로 기대되는 유용한 결과를 언급할 때, 사회에 유익한 결과의 달성방안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특정정보를 지칭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피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 예로, “보다 유용한 목적을 위해”, “특질의 완벽화를 위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등의 불확실한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문구는 발명을 이용할 때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5. 발명의 대상과 그 구성요소

상기한 바와 같이 소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대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장치, 방법, 물질, 미생물의 균주, 공지된 물질의 신규용도.

5-1. 발명의 대상으로서의 장치(Device)

발명의 대상으로서 장치는 새로운 것이며 필수구성요소를 갖춘 것으로서 이들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때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나 또는 구조적 부품이나 구조적부품의 결합이 구조적, 기능적 단일성을 구비한 생산물을 말한다.

장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기계, 기구, 장치, 장비, 공구, 콘테이너, 포장용기, 운송수단, 장착기구, 기계부품, 가구 가정용품, 신발, 통신수단, 건물구조, 건물, 조립물, 건물의 요소 등. 국제 특허 분류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

발명의 대상으로서의 장치를 특징지우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서로의 상관관계에 있는 구조적부품(상세부품, 단위부품 등)의 결합.
- 문제의 해결방안이 심미적인 측면이 아니고, 기술적 핵심을 구체화한 경우(어떤 상세부품 또는 단위부품의 조립형상)
- 상세부품 또는 단위부품의 상호의존적 위치의 결정.
- 상세부품 또는 단위부품의 연결.
- 연결형상.
- 상세부품 또는 단위부품 또는 발명의 대상

그 자체의 입체적 또는 다른 특징적 상호 연결.

-상세부품 또는 단위부품 또는 전체로서의 발명의 대상이 조립되게 하는 재료.

5-2. 발명의 대상으로서 방법(Process).

발명의 대상으로서의 방법이라함은 새로운 것으로 필수적 특징을 갖추고, 사용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재료대상(장치, 환경, 전기 부하, 자장 등)을 가지고 사용되는 상호연결된 작동방법을 말한다.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러재료대상(원료, 재료, 반제품, 생산품목 등)에 사용되는 작동방법들이 결합된 기술적방법으로서 원재료 및 반제품을 완성품으로 처리하는 공정처럼 유용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법.

-채광 및 저장방법과 원재료의 생산방법.

-완성품 및 물질을 유독성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법 및 완성품의 수송목적상 표시, 예비포장, 포장, 분량하는 방법.

-계측, 결정, 확인, 검사, 시험, 품질관리, 용이화, 신뢰성제고, 및 인위적 자연적 특정 파라미터에의 일치화 방법.

-조정, 차동통제의 폐해제거 및 위급상황의 예방 또는 제거방법, 계기, 기계, 기구 생산라인 및 기술적 또는 기타 유용한 공정의 후로우의 정상작동을 제공하는 방법.

-쓰레기 오물처리제거방법, 환경오염방지 및 정화방법.

-물품, 장비, 건물 등의 장착, 조립, 설치방법.

-자연적인 공정과 현상을 필요한 방향으로 연결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방법, 즉, 모래의 안정화방법, 동식물의 성장촉진방법 등

-인간과 동물의 질병예방, 진단 치료방법.

-에너지(열, 전기 등)의 각종형태의 변환, 안정 및 생성방법.

발명의 대상으로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구별된다.

-작용의 실제 또는 제작용의 결합.

-제작용의 시간기능으로서의 순서(연속성,

동시성, 각종결합 등).

-여러가지 필수적인 작용들 중에서 어느 한 작용을 수행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조건(시간, 온도, 압력, 속도, 특정제한요건, 자장, 전장과 같은 파라미터, 주파수나 전자 에너지 파장의 길이 등).

-특정물질의 이용(공급원료, 재료, 시약, 촉매 등).

-특정처리방법의 이용(장치, 공구, 장비 등).

5-3. 발명의 대상으로서의 물질(Substance)

발명자증과 특허가 허여될 수 있는 발명의 대상에는 합금, 혼합물 등과 같은 물질이 있다. 그러나 제약물질과 화학적으로 얻어진 물질에 대해서는 발명자증만 허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약물질,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개정특허법에서는 특허가 허여되도록 초안되어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발명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다.

-비화학적 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물질 즉, 성분물의 순수한 기계적 혼합물(혼합물, 퍼티, 페이스트 등).

-물리적, 화학적 변형을 통하여 얻어진 물질.

이러한 물질에는 특정의 확인곤란한 화학적변형이 기계적인 것과 함께 발생된다(가령 합금, 도자기연약, 건축자재, 유리종류 등). 이들 물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자로 구성되고 화학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들도 비화학적 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화학적으로 얻어진 물질 또는 고분자를 포함한 화학적 복합물.

비화학적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물질을 특징화하는 필수적요소는 질적(성분), 그리고 양적(성분의 합성)인 합성물임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나 그 성분의 구조에 있다.

·화학적 복합물을 그 질적합성(qualitative compound)(어떤 요소들의 원자), 양적합성(quantitative composition)(각 요소의 원자수),

화학적 분자간 결합, 분자내의 상호의존적인 원자배열이란 요소에 의하여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이들 모든 요소의 결합은 화학적복합물의 본질 즉, 그 화학성질을 식별시켜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합은 화학적 복합물의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화학적 복합물의 구조식과 화학적구조는 동 복합물을 식별시키기에 필요, 충분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초로 생산된 것으로 구조식으로 표현된 신규의 구조를 갖고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는 화학적 복합물은 발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초로 얻어진 것이라 해도 이미 알려진 구조를 가진 천연복합물은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유용한 천연복합물을 합성하는 신규의 방법만이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지된 복합물 그룹에 속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사소한 공정만을 거치고 공지된 요소를 가진 화학적 복합물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분자 화합물을 구별짓는 요소로는 화학적 분석, 고분자의 원자 결합구조, 고분자의 전체 구조(직쇄형, 측쇄형), 분자량 및 그의 분포도 또한 필요시 기하구조, 입체구조, 말단기 및 측면기 결합들 상호간의 간격 등이 있다.

이들 요소들은 고분자화합물의 특성을 설명해준다.

화학분석과 한 고분자결합의 구조는 기호나 고분자 화합물 명칭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

대체로 고분자의 구조 및 분자량은 이를 테면, 구체적으로(10-15) 10^4 의 분자량을 갖는 직쇄형 중합체로 표현될 수 있다.

고분자 화합물의 모든 특징중에서 발명으로 인지기하기에 충분하고 필수적인 신규의 컴비네이션은 제1항에 반영되어야 한다. 화합물의 특수명칭은 제18항에 기재되어야 한다.

5-4. 발명의 대상으로서 공지된 물품의 신규 용도(Novel application).

이미 알려진 장치(devices), 방법(processes), 물질(substances)의 새로운 용도도 발명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공지기술 수단(장치, 물질)은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발명으로 간주된다.

발명의 대상의 신규성은 출원일전 발명의 이용예상분야의 불확실성에 있다. 즉, 이미 공지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발명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용한 결과는 동일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지된 장치를 신규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최초의 설계 목적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장치를 공지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일분야 및 다른분야에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치의 새로운 용도의 이용은 그 장치자체의 변형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공지된 물질의 신규용도를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이용하고자 하는 물질이 불특정다수에게 이미 알려져 있을 것.

b) 신규용도를 위한 물질의 명칭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가령, 그 물질이 살충제로 알려졌는데 살균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용도는 신규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지된 제조체가 기존의 목적대로 사용되는데 단지 잡초 한종류를 더 제거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다고 해도 새로운 신규의 용도라고 할 수는 없다.

c) 물질의 신규용도를 당해물질의 공지된 특성이나 특징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비화학적 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물질의 새로운 기능은 그 물질의 양적, 질적 구성, 물리적화학적특성, 명칭, 성분의 구조 등으로부터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면 아니되고, 또한 화학적 복합물의 새로운 기능은 그 구조식과 공지된 특정명칭으로부터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면 아니되며, 폴리머의 새로운 기능은 고분자의 구조와 분자량으로부터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면 아니된다.

d) 동일명칭의 다른물질을 적용하여 얻어지는 결과와 비교하여 추가적이고 새로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5-5. 미생물의 신규주(Strain of microorganism) 와 유전자공학(Genetic engineering).

미생물균주 즉, 필수요소와 응용하기 위한 물질의 생산 또는 다른 유용한 특징을 갖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선택됨으로써 확보된 유전적으로 동일인 세균, 바이러스 균 등의 배양균은 발명의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미생물균주는 기존의 설명되지 않고 신규한 균주로서 설명될 뿐만 아니라 균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에 의하여 식별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균의 형태학적, 생리학적 특징, 균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성질, 또는 이균에 의하여 확보되는 유용한 결과와 관련된 성질 같은 것이다.

유전자공학의 다음과 같은 대상들은 발명으로 인식될 수 있다.

- 플라스미드, 벡터, 핵산의 재조합분자, 핵산의 조각.
- 그들의 제조방법 ; 유전자공학 방법을 통하여 얻는 미생물균주.

화학적, 발효학적작용의 결과로서 핵산분자의 형질전환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화학적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물질에 포함되는 플라스미드, 벡터, 핵산의 재조합분자에 대해서는 오직 발명자증만이 허용될 수 있다.

유전자공학에 의하여 얻어지는 미생물 균주 뿐만 아니라 플라스미드, 벡터, 핵산의 재조합

분자, 핵산조합의 조작방법에 대하여는 발명자증과 특허가 허용될 수 있다.

6.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은 소련에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조직방법과 체계 그리고 경제운영(계획, 금융, 공급, 회계, 신용, 무기, 예측, 요금표, 형식, 카드 등).
- 시설, 건물, 지역의 설계와 구획(구주, 농지, 공원 등)
- 교육, 교수, 훈련, 동물길들이기의 방법과 체계 ; 문법 언어 체계 ; 정보, 분류, 마케팅, 기타연구체계, 서류처리 및 조작을 위한 체계, 수학적 도면작성과 변환체계, 계산기법, 과학연구방법, 설계방법.
- 물품의 외관만을 다루고 있는 고안으로 산업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되는 고안.
- 과학적 발견으로, 그 자체가 어떤 과학, 기술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과학적 이론, 원리.
- 인륜, 사회주의적 도덕,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방안 또는 명백하게 쓸모없는 것.
- 문제 특히, 알고리즘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학적 해결방안.
- 구조의 성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보호의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의 권리는 오직 장치, 방법, 물질 등 그 자체가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계속>

特許管理 순회 啓導(무료) 實施

會員社 特許管理 · 職務發明制度 活性化위해

우리協會에서는 會員社의 特許管理 및 職務發明制度 活性化를 위해 年中 계속 「무료 순회 啓導」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啓導내용은 工業所有權에 관한 것이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며, 申請접수는 우리協會 研修部(Tel 555-6845)에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活用바랍니다.

韓國發明特許協會